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8. 3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907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 8. 7.
- 다. 회부일 : 2019. 8.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여성일자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통합명칭 “여성일누리”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여성능력개발원”을 “여성일누리본부”로, “여성발전센터”를 “여성일누리캠퍼스”로 변경함(안 제4조 제3항, 제7조의 제목,

제8조의 제목,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2항,  
별표 3의 표, 별표4의 제목 및 표, 별표8의 제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참조

(2) 입법예고(2019. 5. 9. ~ 5. 29)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참조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시립 여성일자리 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통합하여 “여성일누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명칭에서 여성을 ‘개발’이나 ‘발전’시켜야하는 피동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던 것을 시대에 맞게 그 명칭을 바꾸고 이를 통해 여성일자리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 2 주요사항 검토

#### □ 여성일자리 시설 명칭 변경

-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제2항1)을 근거로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여성관련시설 중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일누리본부”와 “여성일누리캠퍼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1)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한편 금번 개정안은 ‘2019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6298, 2019.4.19.)의 일환으로 현행 기관명을 여성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하여 일을 마음껏 누린다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인 “일누리”로 통합브랜드화하여 시민들에게 여성일자리 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인지도를 향상시켜 여성일자리 기관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의 한축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제2항)<sup>2)</sup>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법에서 이미 그 명칭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계획들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여성일자리 시설 통합브랜드화 사업이 다소 부실하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임.

---

2)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3.8 성평등 서울 추진계획 (여성정책실, 2019.3)	2019년 여성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여성정책담당관-6298, 2019.4.19.)																
통합 브랜드명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서울시 여성일누리																
명칭선정 방법 등	-명칭공모: 총 264건 접수(2.8~ 2.14), 명칭선정위원회(2.20) -선정결과 : 시설별로 재정립된 방 향, 기능과 통일성 고려	-명칭공모: 총 264건 접수(2.8~ 2.14), 명칭선정위원회(2.20) -선정결과: 시설별로 재정립된 방향, 기능과 통일성 고려																
변경 내용	<table border="0"> <tr> <td style="text-align: center;"><b>&lt;기 존&gt;</b></td> <td style="text-align: center;"><b>&lt;변 경&gt;</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성능력개발원(1)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본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성발전센터(5)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캠퍼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성인력개발센터(18)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센터</td> </tr> </table>	<b>&lt;기 존&gt;</b>	<b>&lt;변 경&gt;</b>	여성능력개발원(1) →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본부	여성발전센터(5) →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캠퍼스	여성인력개발센터(18) →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센터	<table border="0"> <tr> <td style="text-align: center;"><b>&lt;기 존&gt;</b></td> <td style="text-align: center;"><b>&lt;변 경&gt;</b></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성능력개발원(1)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여성일누리 본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성발전센터(5)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여성일누리 캠퍼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여성인력개발센터(18) →</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여성일누리 센터</td> </tr> </table>	<b>&lt;기 존&gt;</b>	<b>&lt;변 경&gt;</b>	여성능력개발원(1) →	서울시 여성일누리 본부	여성발전센터(5) →	서울시 여성일누리 캠퍼스	여성인력개발센터(18) →	서울시 여성일누리 센터
	<b>&lt;기 존&gt;</b>	<b>&lt;변 경&gt;</b>																
	여성능력개발원(1) →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본부																
여성발전센터(5) →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캠퍼스																	
여성인력개발센터(18) →	서울시 여성일자리플러스 센터																	
<b>&lt;기 존&gt;</b>	<b>&lt;변 경&gt;</b>																	
여성능력개발원(1) →	서울시 여성일누리 본부																	
여성발전센터(5) →	서울시 여성일누리 캠퍼스																	
여성인력개발센터(18) →	서울시 여성일누리 센터																	

### 3 종합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용어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그러나 제2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일자리기관의 통합브랜드화가 실제로 일자리기관 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을 통한 명칭변경이 여성일자리기관의 역량 제고나 기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임.